

제2차 표준안평가단 자문회의 결과보고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표준안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5. 8. 6.(목) 10:00 ~ 15:00
- 장 소 : 한국임업진흥원 숲드림실(2층)
- 참석대상 : 표준안평가단 및 관계자 등 12명
 - 생명의 숲, 한국SGS,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자연환경국민신탁, 엔스타알앤씨, 한국임업진흥원

II. 주요 내용

- PEFC SFM 요구사항 대비 한국형 산림경영인증표준(안) 비교
 - PEFC 요구사항 대비 불필요하게 추가하여 더 규제적인 성격의 한국 지표를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
 - 한국 지표상에 현재 누락되어 추가 반영이 요구되는 사항 파악
- 해외 제도의 소규모산림용 표준 및 일반 표준을 비교
- 한국형 인증표준(안) 도출 문제점 공유 및 개선사항 논의(붙임 참고)
 - 검토내용을 토대로 제2차 표준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 * 기준 2부터 7까지 해당하는 지표 검토 완료

붙임 한국형 산림경영인증표준(안) 주요 검토 의견 1부.

한국형 산림경영인증표준(안) 주요 검토 의견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표준(안)	국·공유림 현장 의견	사유림 현장 의견	표준안평가단(1,2차) 검토의견	비고
1	생물다양성의 보전			
1.1	산림경영계획 상에 산림 생태계의 종·유전적 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음을 <u>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FC 5.4.1항 대비 규제적 이므로 <u>이탤릭체</u>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도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FC 5.4.1 - 산림경영계획은 생태계, 종, 유전적 수준, 그리고 적합하다면 경관 수준에서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Forest management planning shall aim to maintain, conserve and enhance biodiversity on ecosystem, species and genetic levels and, where appropriate, diversity at landscape level.)

<p>1.2</p>	<p>산림생태계의 임상별, 천이단계별, 영급별 면적 및 구성비 등 산림 생태계 현황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 “천이단계별” 삭제 · 현재 자연 천이단계별 산림조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p>	<p>- 산림생태계 현황파악은 불가능하지 않으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영급별 현황 이외의 것은 산림공간정보 시스템에 있으므로 표준 수정 또는 완화 필요</p>	<p>▪ “천이단계별”의 의미는 식생 조사의 동반을 요하므로 현행의 산림조사 수준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 등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탈릭체 부분 삭제</p>	
<p>1.3</p>	<p>생태적으로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산림 지역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상태가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조사 및 지도 작성 등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a) 수변구역이나 습지 소생물권 등 보호되고 있고, 희귀하고 민감하거나 대표적인 산림 생태계 b) 보호되어야 하는 재래종이나 멸종 위기 종의 서식지를 포함한 지역 c) 멸종 위기이거나 보호받는 현지 내 유전자원이 포함된 지역 d)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이 풍부하게 분포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경관지역</p>	<p>- 산림자원조사는 임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 동식물에 대한 조사는 어려움(공유림)</p>	<p>- 1.3~1.4 사유림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표를 조정 - 정부의 조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p>	<p>▪ 경영주체가 해당 지역을 지도에 작성하거나 정부의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해당 내용을 파악(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제적인 문구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탈릭체 부분을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를 구축(구비)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p>	
<p>1.4</p>	<p>희귀·위협·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를 위한 경영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a) 생물 다양성의 유지상 중요한 재래종</p>			<p>▪ 경영주체가 직접 해당 내용에 관한 경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현장 이행의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의</p>	

	<p>이나 희귀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관리 기술</p> <p>b) 해당 구성요소의 종류와 개체수를 파악하여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한 적절한 보호대책</p> <p>c) 불법 수렵·포획·채취 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통제 등 적절한 조치</p> <p>d) 희귀·위협·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시 해당 종의 개체수를 늘리는 등의 보호조치</p>			<p>공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탈릭체 부분을 “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정도로 수정</p> <p>▪ 지표에 대한 해설 부분이나 매뉴얼 상에 “관련 지침”에 해당되는 예시 제공</p>	
<p>1.5</p>	<p>신규조림 및 재조림 시에는 적절한 임목 축적 수준과 산림경영목표 및 현지 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p> <p>a) 가급적이면 현지 조건에 잘 적응한 재래종 또는 산지적응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p> <p>b)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환경적·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래종 또는 변종을 이용한다.</p>	<p>- 재래종, 산지적응종, 외래종, 변종에 대한 정의 제시(특히 외래종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종인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종인지의 경계가 모호함)</p> <p>- 외래종, 도입수종의 경우 산지적응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설정 필요</p>	<p>- 외래종의 정확한 의미 해석 필요</p> <p>- 외래종 또는 변종에 대한 해석 필요</p>	<p>▪ a) 지표에 대한 해설 부분에 재래종, 산지적응종, 외래종, 변종의 정의 추가</p> <p>▪ b) 「산림청 산림임업용어사전, 2011」에 따르면, “외래종”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종과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종 모두를 포함”하고, “외래수종”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수종만을 포함”하므로, 우리나라 국토가 좁은 면적임을 감안해 타 지역 이동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이탈릭체 부분을 “외래수종”으로 수정</p>	

1.6	유전자 변형에 의한 나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유전자 변형에 의한 나무”에 대한 의미를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 필요		▪ 지표에 대한 해설 부분에 “유전자 변형에 의한 나무”의 정의를 추가하고, 매뉴얼에 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유전자 변형 수종 목록 제시	
1.7	산림경영사업이 가능한 경우 이령림 및 혼효림과 같이 수평적·수직적 구조의 다양성, 종 다양성 및 경관 다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산림경영사업 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산업경영 사업은 이령림 및 혼효림과 같이~”로 자구 수정		▪ 이탈릭체 부분은 “산림경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산림경영사업은 적절하다면 ~방법을” 정도로 자구 수정	
1.8	생태계에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숲 가꾸기와 벌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숲가꾸기 벌채작업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평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검토(현장 실행이 어려움)		▪ 환경적 영향평가를 하라는 내용은 지표상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표의 이행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영향평가의 실행이 불가피 하므로 매뉴얼 상에 약식의 “환경적 영향 평가서” 양식을 매뉴얼에서 제공	
1.9	경영 목표에 따라 야생동물의 밀도가 산림 갱신, 생장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림청이 야생동물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상황(환경부소관)에서 야생동물 밀도 등을 조사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만, 조림 활착률 조사 시 야생동물에	- 사유림에 적용이 어려움	▪ 야생동물의 “밀도”라고 표현할 경우 밀도에 대한 조사·관리를 하라는 내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밀도”를 삭제하고, PEFC 5.4.12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방목”을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수정	▪ PEFC 5.4.12 -경영 목표에 따라, 동물 개체군의 크기와 방목이 산림갱신과 생장에 미치는 압력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압력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조치를

		<p>대한 피해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 하고 있으므로 이런 활동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사항에서 “산림자원 조사 또는 목록”은 불필요하므로 제외. 확인사항에서 “야생 동물에 의한 환경평가 기록”을 요구해야 하는지 검토 		<p>▪ 전체 문구를 “방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동물 개체군의 크기가 산림갱신과 생장에 미치는 압력과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압력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p>	<p>취해야 한다. (With due regard to management objectives, measures shall be taken to balance the pressure of animal populations and grazing on forest regeneration and growth as well as on biodiversity.)</p>
1.10	<p>고사목, 속이 빈 나무, 오래된 수풀과 희귀목은 주변 생태계와 산림의 안정성 및 건강을 고려하여 <u>생물 다양성을 보장하는 안정장치의 일환으로 원래의 상태(본수와 분포)를 유지하도록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수와 분포”삭제(원문 확인) · 본수와 분포까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p>▪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규제이므로, <u>이탈리체</u> 부분을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과 분포를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p>	

2	산림 생태계 생산력의 유지				
2.1	산림경영계획 상에 지속가능성이라는 토대에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과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산림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을 경영 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2	<p>목재 및 비목재임산물과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산림의 생산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a)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지속성을 고려하면서 산림 생산과 관련된 장기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p>b) 산림경영계획에 경제림 면적과 비율을 명시하고, 이를 지도상에 명확히 표시하여 관리한다.</p> <p>c) 산림생태계의 생산 잠재력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p> <p>d) 벌채지는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재조림하고, 적지 적수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조림하되, 천연갱신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p>	<p>- d) “천연갱산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필요한 문구인지 검토(원문 확인)</p> <p>· 천연갱신은 인공갱신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조림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p>	<p>-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를 전략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시행한다“로 수정</p> <p>- “현재의 상태” 보다는 “일정기간마다”로 수정 필요</p>	<p>▪ a) “장기계획” 속에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탈 리체 부분 삭제</p> <p>▪ b) 경제림 면적과 비율을 명시하는 것 대신 추가적인 기능까지 포함하도록 전체 문구를 “산림경영계획 상에 산림의 기능 구분을 명시한 도면을 갖추어야 한다”로 수정</p> <p>▪ c) 산림생태계의 생산 잠재력 및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PEFC에서 요구하지 않는 불필요한 지표이므로 전체 문구를 삭제</p> <p>▪ d) “벌채지는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재조림하고” 의 내용은 지표 7.1항과 중복되고, “적지적수“의 내용은 지표</p>	

				1.5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천연경산~실시한다”까지는 PEFC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그대로 존치	
2.3	<p><u>산림의 기능을 고려하여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과 서비스의 생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a) 매년 생산하는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과 서비스의 종류 및 생산량을 기록하여 관리한다.</p> <p>b)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과 서비스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p> <p>c) 특정 임산물 생산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수준을 고려한다.</p>	<p>- “특정 임산물”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의미 해설 추가</p>	<p>- 생산량을 “생산 또는 판매량”으로 수정</p> <p>- 이익과 비용에 대한 기록관리가 필요한지 검토</p>	<p>▪ a)~c)의 내용은 PEFC 요구 사항에 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규제적이므로 a)~c)의 내용을 삭제하고, PEFC 5.3.4항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산림의 기능을 고려하여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과 서비스의 생산을 장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p>	<p>▪ PEFC 5.3.4</p> <p>-산림경영사업은 산림자원을 유지, 증진시켜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임산물과 서비스의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p> <p>(Forest management practices shall maintain and improve the forest resources and encourage a diversified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over the long term.)</p>
2.4	<p>해당 산림경영단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 “제도”가 의미 하는 바 또는 예시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표 불필요시 삭제(원문 확인)</p>	<p>- 사유림에서 적합한지, 혹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논의</p> <p>- 관련 항목과 관련된</p>	<p>▪ “제도”라는 표현이 모호하므로 PEFC 5.3.3항에서 제시하는 policy instruments에 맞게 “정책수단”으로 수정하고,</p>	<p>▪ PEFC 5.3.3</p> <p>-산림경영계획은 관리되고 있는 산림의 다른 이용이나 기능을</p>

			제도의 예시 필요	지표에 대한 해설 부분에 이에 대한 예시를 추가	고려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은 상업 및 비상업적 임산물과 서비스의 생산을 지원하도록 제정된 정책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Forest management plans or their equivalent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t uses or functions of the managed forest area. forest management planning shall make use of those policy instruments set up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forest goods and services.)
2.5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 숲 가꾸기, 산림 갱신 등은 관련 법률 및 산림경영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 해당 산림의	- a) 천연림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 · 우리나라에는 국제적	- 사유림에 있어 연간 벌채량이 목재생산량이 아니므로, 국가에서	▪ “관련 법률~실시하되” 는 산림 경영 시 당연한 불필요한 말이므로 삭제하고, “해당	▪ PEFC 5.2.12 -비료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통제된

	<p>생산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a) 산림경영은 천연림의 보전과 갱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p> <p>b) 산림경영은 산림의 생태적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p> <p>c) 연간벌채량은 목재의 성장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이에 맞게 생산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산림의 재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을 생산하도록 한다.</p>	<p>기준에서 일컫는 천연림(원시림)이 거의 없으므로 지표상의 천연림이 국제적 기준에서의 원시림을 의미하는지 혹은 우리나라에 대부분 존재하는 천연갱신에 의해 조성된 산림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p> <p>- c) “비목재임산물”삭제 · 목재 생산량과 임지의 재생산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비목재임산물 생산량은 그렇지 않음</p>	<p>정한 벌기령을 따르도록 하는 수준으로 지표 개선 필요</p> <p>- 사유림에서 적용이 어려움</p> <p>- 실제적 연간 성장량 파악이 어려움</p>	<p>산림의 생산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의 예시로써 PEFC 5.2.12항의 내용을 지표에 대한 해설부분에 추가</p> <p>▪ a) 지표 2.2 d)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p> <p>▪ b) 지표 1.8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p> <p>▪ c) 중요 지표이므로 2.6항으로 신설하고, 매뉴얼 상에 연간 성장량 측정방법을 표기</p>	<p>방법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p> <p>(Where fertilizers are used, they shall be applied in a controlled manner and with due consideration for the environment.)</p>
<p>2.6</p>	<p>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적절한 기반시설이 계획·설치·유지되어야 한다.</p> <p>『확인 사항』</p> <p>• 환경영향 평가서</p>	<p>- 기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검토</p> <p>※ 동지표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미하는지 지표의 해설이 필요</p>	<p>- “필요한 기반시설을 계획, 설치, 유지하는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p> <p>-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 분야 자문 및 환경 분야 검토의견서로 대체</p>	<p>▪ 확인사항 상에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로만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 평가서, 환경적 영향 검토의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수정</p>	

3		산림 생태계 건강 및 활력의 유지			
3.1	산림경영계획 상에 산림생태계의 건강 및 활력의 유지·증진시키고, 또한 가능한 경우 조림적 방법을 통해 황폐된 산림 생태계를 복구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2	산림경영단위 내의 임상 및 주요 수종과 식생종류의 비율 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산림작업을 시행한다. b) 숲가꾸기, 간벌 등의 시업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육림작업을 시행한다.	- “임상 및 주요 수종과 식생종류”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원문 확인)	-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적절한 지침으로 변경	▪ “임상 및 주요 수종과 식생종류의 비율”은 관리 범위가 넓어 현장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이탈릭체 부분 을 “산림 생태계의 건강 및 활력”으로 수정	
3.3	산림경영단위 내의 시업제한지 및 보호 구역에 대하여는 그 위치와 면적을 도면 상에 표시하여 해당지역의 생태계 교란 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생태계 교란”을 “생태계 피해”로 변경 · “생태계 교란”은 “생태계 피해”의 한 종류이므로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		▪ 지표 1.3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	
3.4	산림생태계의 건강과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만한 인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인자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산불, 병해충 등 재해에 대한 방제	- a) “생물학적 예방책”이라는 표현보다 “친환경적 예방책”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 · “친환경적 예방책”의	- 실현가능한 생물학적 예방책을 제시	▪ a) 국·공유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이탈릭체 부분을 “친환경적 예방책”으로 수정 ▪ c) 현장에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p>매뉴얼을 보유하여 이를 적극 활용 하되, 가급적이면 살충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생물학적 예방책을 사용한다.</p> <p>b) 산불, 병해충 등 재해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p> <p>c) 산불, 병해충, 가뭄, 태풍 및 기타 재해가 발생한 시점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p> <p>d)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복구한다.</p> <p>e) 산림생태계의 건강과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p>	<p>한 가지 종류가 “생물학적 예방책”이 될 수 있음</p> <p>· 천적 이용, 비닐 도포 등 친환경적(생물학적) 예방책에 대한 예시를 지표해설 부분에 추가</p>		<p>c)의 내용은 e)의 내용의 한 예시로서 포함될 수준의 내용이므로 삭제</p> <p>· d)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복구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지를 무조건 복구하기보다는 방치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으므로 삭제</p>	
3.5	<p>국제 협약 및 국내 법규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화학비료, 살충제와 고독성 살충제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p>	<p>- 지표해설 상에 국제 협약 및 국내 법규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화학비료 목록 제시</p>		<p>· 국·공유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매뉴얼 상에 “국제 협약 및 국내 법규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화학약품의 목록” 제시</p>	
3.6	<p>나무와 토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숲 가꾸기, 벌채, 운재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p> <p>a) 벌채작업과 관련한 기술지침을 구비하도록 하고, 벌채 시 발생하는 폐잔재가 최소화되도록 벌채방법을 채택한다.</p> <p>b) 산림작업 중 기름의 유출이나 산림에</p>	<p>- a) 폐잔재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p> <p>· 폐잔재는 자원활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유기질 비료로써 가치가 높지만, 산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계곡 등으로 유입</p>	<p>- 폐잔재의 의미가 벌채 잔재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벌채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로 변경</p> <p>- 선도산림경영단지에만 적용 가능하고 소규모 산림에서는 실천하기</p>	<p>· a) 지표 3.6항이 “숲 가꾸기, 벌채, 운재 기술 등” 전체적인 산림작업과 관계되는 내용이므로 “산림작업”으로 수정하고, “산림작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체 내용을 “산림작업과</p>	

	<p>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하고,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되 가급적이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으로 처리한다.</p>	<p>되어 2차 재해를 유발하는 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p>	<p>힘든 지표</p>	<p>관련한 기술지침을 구비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알맞은 작업 방식을 선택한다”로 수정</p>	
<p>3.7</p>	<p>임도시공, 사방사업 및 기타 모든 물리적인 교란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p> <p>a) 수변구역이나 습지 주변에 임도 및 기타 장애물의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산림토목작업 시 토양·수자원·생물다양성 및 경관의 보전을 위해 완충지대를 적절히 설정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p> <p>b) 임도 시공 및 사방사업은 해당 기술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가급적이면 환경 친화적 공법으로 실시한다.</p> <p>c) 기계작업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작업 시기 선정 시 주의를 기울인다.</p> <p>『지표에 대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도시공, 사방사업 및 기타 모든 물리적인 행위에 의한 생태계 교란 시에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a ~ c를 실시해야 한다. <p>물리적인 교란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한 신규 조림 ... 	<p>- a) “수변구역”에 대한 정의(계곡, 천, 계류 등 포함여부 등)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표상에 “수변구역이 나오는 경우 각각의 의미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수변구역: 1.3/3.7/4.4)</p> <p>- a) “완충지대”설정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제시</p> <p>- 지표 해설 상에 “광범위한 신규 조림”이 해당 지표에 대한 예시로 적절한지 검토하고, 적절하다면 “광범위한 신규 조림”의 범위를 제시</p>	<p>- 임도시공 등은 외부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기계작업은 전문기사에 의해 수행되어도 무방하도록 개선</p> <p>- 일반 소규모 산주에게는 적용 곤란</p>	<p>• 지표 3.7항은 기준 3(산림생태계 건강 및 활력의 유지)보다는 기준 4(토양과 수자원의 보전과 유지)에 부합하는 내용 이므로 기준 4의 하위 지표로 이동</p> <p>• a) 국·공유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수변구역” 및 “완충지대”에 대한 정의를 지표에 대한 해설 상에 추가하고, “산림토목작업”이라고 한정짓지 말고, 벌채작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림작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작업”으로 수정</p>	

4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과 유지				
4.1	<p>산림경영계획 상에 기반시설의 보호, 토양 침식으로부터의 보호, 수자원 보호 및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수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사회에 대한 산림의 보호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p>				
4.2	<p>산림작업이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산림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림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a) 필요한 경우 환경적 영향을 평가 하여 경영계획에 반영한다.</p> <p>b) 임업기계에 사용되는 연료 및 오일, 기타 화학물질은 관련지침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계작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생분해성 체인 오일 및 유압식 액체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기계에 사용되는 연료를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 a)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로 필요한지 검토 - 환경적 영향평가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용어 변경 필요 - b)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를 “가능한 한”으로 수정 - 친환경적인 제품의 사용은 예산문제로 어려움(공유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4.2항은 지표 1.8항 및 지표 3.6항과 의미가 중복되고, a)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 ▪ b) 지표 3.6항과 내용이 일맥상통하므로 지표 3.6항의 하위지표로 추가하여 존치하되, 국·공유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를 “가능한 한”으로 수정 	

<p>4.3</p>	<p>산림경영단위 내에 존재하는 아래와 같은 입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위치와 수계망도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의 기초 현황자료를 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a) 토양 및 수자원 보호를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지역(침식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 하천으로의 과도한 침식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등)</p> <p>b) 급경사지 혹은 침식 가능성이 예보된 지역</p> <p>c) 임도시공, 사방사업 등의 산림토목 작업 시행 예정지</p>	<p>- “수계망도”라는 용어를 “수계(망)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라고 수정</p> <p>· 일반적으로 수계망도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지형도 상에 수계에 대한 레이어가 있는 형태임</p> <p>· 수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p>		<p>▪ 국·공유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수계망도”를 “수계의 위치를”으로 문구 수정</p>	
<p>4.4</p>	<p>수자원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산림을 특별히 관리하고,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물질의 사용, 부적절한 무육 방법의 이용을 피하여야 한다.</p> <p>a) 수자원의 양과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림경영 사업은 최소화한다.</p> <p>b) 수변구역에는 토양침식 방지 및 수질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지도상에 표시한다.</p>	<p>- 확인사항에 “완충지대와 관련된 지침”제외 여부 검토</p> <p>· 현장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경영계획서 등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이 미흡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p>		<p>▪ “완충지대”의 정의를 지표에 대한 해설 부분에 추가</p>	

5 산림자원의 유지 및 증대와 전지구 탄소 순환에의 기여					
5.1	산림경영계획 상에 산림면적을 유지·증가시키고, 산림 자원의 경제적·생태적·문화적·사회적 가치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5.2	<p>산림경영단위 내의 산림관리가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영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p> <p>a) 조림계획 시 이산화탄소 고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종의 식재를 고려한다.</p> <p>b) 산림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능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벌채 시 발생하는 폐잔재 및 간벌재를 적절히 재활용 한다.</p>	<p>- a) “이산화탄소 고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종의 식재를 고려한다”는 내용 검토</p> <p>· 해당 지표는 “적지 적수의 원칙을 적용 하여 재조림”하라는 지표(2.2 d)의 내용과 다소 상충이 될 수 있음</p> <p>※ 확인사항에 “수종에 따른 이산화탄소 고정능력 평가 기록”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친환경성을 고려한 기록”은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삭제하고, 이에 대한 의지표명을 확인하도록 수정</p>		<p>·a) “이산화탄소 고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종의 식재”는 적지적수의 원칙과 상충 될 수 있고, 이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산림경영의 한 방법일 뿐이고, 벌기령 연장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므로 삭제(지엽적 내용)</p> <p>·b) 지표 5.2항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고, PEFC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산림작업 시 “화석 연료”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지표상에 포함 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 b) 벌채 시 발생하는 폐잔재 및 간벌재를 재활용하는 것이 작업현장에 쌓아 두고 거름으로 쓰는 것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검토 			
5.3	산림경영은 산림자원조사, 계획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의 순환 과정으로 구성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5.4	<p>천연림을 인공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산림을 다른 형태로의 토지 이용을 위해 전용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합당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여서는 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토지이용 및 산림관리와 관련한 국가 및 지역의 정책과 법률을 따르는 경우 혹은 국가나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경우 b) 임상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림을 원시림으로 용어 변경 - 천연림의 정의 필요 - “임상의 아주 작은 부분만”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림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천연림”을 원시림(1차림)에 해당하는 천연림“으로 변경하고, 지표에 대한 해설 부분에 명확한 정의 추가(PEFC에서도 “천연림”은 “원시림”을 의미) 		

	<p>하는 경우</p> <p>c) 희귀·위협·멸종위기에 처한 산림 생태계나 그러한 종의 서식지, 문화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역 및 기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p> <p>d) 산림의 장기적인 보전과 경제적·사회적인 혜택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p>				
5.5	<p>폐경지 및 무림목지는 가능한 경우 산림으로의 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신설) PEFC 5.1.8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한국형 지표상에 없으므로 “<u>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이 정해져야 한다.</u>”라는 내용의 지표를 신규 추가하고, 지표에 대한 해설 부분에 이에 대한 예시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산림경영주체의 이행 의지를 표명한 각서” 등을 표기</p>	<p>▪PEFC 5.1.8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책임을 맡겨야 한다. (Responsibilitie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hall be clearly defined and assigned.)</p>

6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사회 경제적 이익의 강화 및 유지					
6.1	산림경영계획 상에 사회 경제적인 산림의 다목적 기능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회 경제적인”이라는 용어가 필요한 사항 인지 검토		▪ “사회 경제적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존치	
6.2	산림작업은 산림 자원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사회 경제적 기능 및 휴양기능과 심미적 가치를 고려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산림 자원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사회 경제적 기능, 휴양기능 및 심미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 중에 우선 순위 결정(주객이 전도 되었다는 의견, 원문 확인) - 산림작업 시 산림의 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추구해야한다는 의미 인지 등 검토		▪ “산림 자원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근본이 되는 조건으로, “사회 경제적 기능 및 휴양기능과 심미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존치	
6.3	산림 주변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복지와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게 고용,		- 지역주민으로부터 노동력 확보가 곤란하므로 포괄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p>교육 및 계약상 공정하거나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p> <p>b) 지역사회에 산림과 관련한 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규제사항을 알리거나 이를 적절히 관리한다.</p>				
6.4	<p>지역주민이 문화적·생태적·경제적·종교적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및 장소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a) <u>마을 보호수, 묘지, 성황당 등</u> 지역 주민이 문화적·생태적·경제적·종교적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및 지물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합의를 통해 확인하여, 현지에서 적절하게 구획·관리한다.</p> <p>b) 위와 같은 지역 및 지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한다.</p>	<p>- a) 묘지는 「분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삭제(원문 확인)</p>	<p>- 묘지, 성황당 등을 도면에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p> <p>- 6.4.b 와 6.5.c가 중복되어 보이므로 구분 가능한 표현 검토</p> <p>- 6.4.b, 6.5.c, 6.8.d, 6.10.g 모두 분쟁해결 절차이므로 하나의 지표로 통합</p>	<p>▪ <u>이탈릭체</u> 부분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으로 피심사자가 해당 내용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지표에 대한 해설 부분에 예시로 추가</p>	
6.5	<p>산림소유권 및 사용권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p> <p>a) 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산림 소유에 관한 합법적인 증명</p>		<p>- 사유림이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려움</p>	<p>▪ a) <u>이탈릭체</u> 부분은 예시이므로 지표상에서는 삭제하고, 지표에 대한 해설 부분에 추가</p>	

	<p>문서(예: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대부계약서, 대리경영 계약서 등)를 보유한다.</p> <p>b) 지도상에 산림 소유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다.</p> <p>c) 산림 소유 경계 및 사용권으로 인한 분쟁 조정체계를 갖춘다.</p>			<p>▪c) 사유림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산림 소유 경계 및 사용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활용한다”로 수정</p>	
6.6	<p>산림경영주체 및 산림노동자 등 피고용인은 산림경영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p> <p>『지표에 대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노동자 등 피고용인에게는 산림 경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필요한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p>피고용인이란 산림시업을 하는 산림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하는 외주처를 포함 할 수도 있다.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림청 산림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p>	<p>- 지표해설 상에 “산림 교육원”을 교육기관으로 한정짓지 않도록 수정</p>		<p>▪지표에 대한 해설 상에 “산림 교육원”을 “관련(교육)기관”으로 수정</p>	
6.7	<p>산림경영에 있어 경영규모에 따른 지역 사회의 효율적인 참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p>	<p>- a) 사유림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한 재검토</p> <p>- a) “협의회”를 “지역</p>	<p>- 정형화된 분쟁시스템 보다는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와 같은</p>	<p>▪a) 지표 상에 “협의회”라고 지엽적인 내용을 제시했으므로 국·공·사유림 현장</p>	

	<p>a) 국·공유림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의사결정, 자료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은 산림경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록을 남긴다.</p> <p>b) 산림과 인접한 지역사회의 산림경영 정보 및 노동력 수급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한다.</p>	<p>사회의 이해관계자가 참여 가능한 회의” 등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수정</p>	<p>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완화</p>	<p>의견을 수용하여 이탈릭체 부분을 “활동을 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로 문구 수정</p>	
<p>6.8</p>	<p>이해관계자들 간의 효율적인 인센티브 배분 및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p> <p>a) 국·공유림의 경우, 해당 산림경영 단위 내의 이해당사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산림경영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p> <p>b) 국·공유림의 경우, 산림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편익의 발생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p> <p>c) 이해관계자 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한다.</p> <p>d)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한다.</p>	<p>- a)b) 사유림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한 재 검토</p> <p>- 사유림의 경우 함께 산림을 소유하는 산주나 산림경영에 함께 투입 되는 산림 경영주체가 이해관계자로서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표해설 부분에 명시 하여 이들이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사례 등을 추가 제시</p>	<p>- 사유림이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려움</p> <p>- 분쟁해결협의회 구성에 대한 기록으로 대체 가능</p>		

6.9	<p>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연구 활동 및 자료 수집에 기여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된 관련 있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p>	<p>- 연구활동 지원이 강제 사항인지 검토 후 수정 (원문 확인)</p>	<p>- 연구활동 협조로 문구 수정</p>	<p>▪ 국·공·사유림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강제사항보다는 협조사항으로써 이탈릭체 부분을 “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p>
6.10	<p>산림경영주체와 산림노동자는 기본적인 ILO협약 및 국내 노동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산림경영으로 발생하는 고용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a) 모든 계급의 직원 채용, 배치, 교육, 훈련, 승급 및 해고와 관련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p> <p>b) 모든 산림노동에 있어 ILO에서 규정한 아동 및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p> <p>c) 노동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며, 국내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임금 책정 시스템을 갖춘다.</p> <p>d) 산림노동자의 고용에 관련된 법규 및 취업규칙 등을 상비한다.</p> <p>e) 개별 산림노동자의 고용 계약서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고, 산림노동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p> <p>f) 산림노동자의 고용 계약서에는 노동법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모든 권리가</p>	<p>- h) “산림노동자를 고용하는 계약자는 관련 법률의 요구사항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을~”로 수정</p> <p>-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고, 국내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p>		<p>▪ 지표 6.10항에서의 “산림경영주체”는 외주업체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이탈릭체 부분을 “산림경영주체 (외주사업일 경우 외주업체 포함)”으로 수정</p> <p>▪ h) 국내법에 따라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므로 대규모와 소규모를 구분할 필요 없이 “산림노동자를 고용하는 계약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수정</p> <p>▪ i) 산림경영주체는 산림노동자가 산림작업과 관련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이탈릭체 부분을 “권리가 있으며, 산림경영주체는 이에 대한</p>

	<p>동등하게 부여된다는 것과 재해로 인한 보상규정 등을 명시한다.</p> <p>g) 고용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한다.</p> <p>h)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산림노동자를 고용하는 계약자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에 노력한다.</p> <p>i) 산림노동자는 산림작업과 관련한 교육(응급조치, 안전교육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산림경영주체는 이의 이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한다.</p> <p>j) 산림경영주체는 산림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안전지침,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을 제공한다.</p> <p>k) 산림노동자는 작업 전 반드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며, 임업장비의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p>			<p>책임을 가지고 철저히 이행한다”로 수정</p> <p>▪ “작업 전”에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 대신 “작업 시”에 착용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p>	
--	--	--	--	--	--

7 산림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경제적 체계					
7.1	국내에서 시행 중인 모든 관련 법 및 규정과 한국이 가입한 모든 국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이라는 용어 삭제 -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한정하는 것으로 문구 조정 - “입증하여야 한다”대신 “준수하여야 한다” 정도의 선언규정으로 수정 -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입증 방법 등을 지표해설 상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하므로 삭제 ▪ 지표 7.1항과 지표 7.2항의 내용을 통합하여 “산림경영 주체는 산림경영과 관련된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해당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 목록을 매뉴얼에 제시 	
7.2	산림경영주체 및 산림노동자 등 산림 경영과 관계되는 인력은 산림경영과 관련된 법 및 규정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경영과 관련된 법 및 규정”이라는 광범위한 표현 대신 필수적 사항을 명시하여 구체화 · “산림경영과 관련된 법 및 규정”이라고 포괄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 현장의 산림노동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산림노동자에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노동자가 관련된 법 및 규정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산림경영주체가 이를 파악하도록 하여 지표 7.1항과 통합 	

		되는 안전·환경·화학물질 취급 등 필수적으로 요하는 사항만을 숙지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필요			
7.3	불법 벌채, 불법 산림 전용 및 기타 허가되지 않은 활동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4	산림의 규모와 산림 경영 활동의 강도에 적합한 장기 경영계획을 현행 법규에서 명시한 기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산림경영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a) 산림경영단위의 장기 경영 목표 및 이에 대한 실행 가능한 계획 b) 산림경영단위의 토지 정비 내역 c) 산림경영단위의 위치, 형상 및 면적 d) 산림경영단위의 지황, 임황, 입목 축적 및 성장량 e) 산림경영단위의 수종에 따른 작업종 및 운벌기 f) 지속가능한 산림생산력(비목재임산물 포함)을 고려한 벌채(수확)량, 벌채 시기의 배분 및 재조림 계획			·h) 지표 7.3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	

	<p>g) 임도·방화선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계획</p> <p>h) 무허가 혹은 불법 산림활동의 범위 및 규제 내용</p>				
7.5	<p>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영 계획의 개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요약본의 경우 기업과 개인의 기밀정보를 제외할 수 있고, 국가 법률에 의하여 혹은 문화 유적지의 보호와 민감한 자연 자원의 특성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p>				
7.6	<p>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기 위한 자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p>			<p>▪PEFC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p>	